

4. 시사점

아직까지 다른 산업에 비하여 B2B광고시장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B2B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업체들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B2B 광고시장의 성장에 강한 기반이 되고있다. 현재 B2B 광고의 대부분은 기술관련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B2B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나감에 따라, B2B산업내의 광고노출수나 점유율에 있어서 지배적인 부문에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B2B광고시장의 전망은 밝으며 이러한 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1] “전자상거래 설문조사”, 전자신문, 2000. 4. 3
- [2] “AdRelevance: Business is booming”, (<http://www.adrelevance.com/intelligence/intel.jsp#mrb>)

MS 독점판결요지 및 국내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위촉연구원 전옥선
(T. 570-4342, lovejos@kisdi.re.kr)

1.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송 진행과정

지난 4월 3일 미국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법원의 독점 판결을 받으며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진행 내용

연 도	소 송 내 용
1991년	전세계 PC의 93%가 MS운영체계를 사용하면서 미 FTC, MS의 PC OS 시장 독점에 대해 조사
1993년	미 법무부와 유럽위원회가 독자적 조사 시작
1994년 7월	미 법무부가 PC와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한 일부 계약을 해제하라는 내용의 동의명령에 MS가 합의함에 따라 1993년에 시작된 조사를 마감함

연 도	소 송 내 용
1997년 10월	미 법무부는 MS가 윈도우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 팔도록 PC업체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MS제소
1997년 12월	연방지법원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PC 업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고 MS는 이에 항소함.
1998년 5월	미 법무부와 19개 주 법무부는 MS가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했다고 제소
1998년 6월 23일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MS가 윈도우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잭슨 판사가 윈도우95에 부과한 제재조치 기각
1998년 10월 19일	반독점 재판 개정
1999년 11월 5일	잭슨 판사는 MS가 독점이라고 예비사실판정을 내림
1999년 11월 19일	잭슨 판사는 연방 항소법원의 리차드 포스너 판사를 정부측과 MS간의 자발적 합의를 위한 비밀협상 중재관으로 지명
2000년 4월 1일	미 정부와 MS의 협상이 결렬
2000년 4월 3일	잭슨판사는 MS에 독점판결

자료: 「MS가 걸어온길」, 디지털타임스, 2000. 4. 6. 재구성

MS의 소송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1991년부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소송에 시달려 왔으며, 이번 사건은 '98년 5월에 미법무부와 19개 주 법무부가 MS를 불공정 경쟁업체로 제시하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 미연방법원은 MS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며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미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

2. 정부와 MS의 협상내용

정부와 MS는 소송 발생 이후 포스너 판사의 중재로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MS의 요구 안에 차이가 많아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 정부의 요구 안은 윈도우시스템 가격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일정제시, 끼워 팔기 금지, 다른 업체와 배타적 계약 체결 및 보복 조치 금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정보를 다른 업체에 차별 없이 제공,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 소스코드(프로그램 설계도) 공개, 보다 자유로운 OEM소스코드 라이선스 조건, 적어도 3년간 윈도우버전 가격인상금지 등이었다.

그러나 MS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소스코드 부분 공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와 윈도우 분리, 윈도우 가격체계 일관성 유지 등을 제시하였고 회사의 생사가 달린 윈도우 플랫폼은 끝까지 방어하려 하였으며 이런 의견의 불일치로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3. 판결문의 요지 및 향후 전망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셔먼 독점금지법’ 15조 1, 2항을 위반했으며 반경쟁적 방법으로 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하고 웹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 했으며 웹브라우저와 윈도운영체제를 불법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 및 주정부가 주장한 26개 위반 사항 중 23개를 받아들였다.

셔먼 독점금지법 중 15조 1항은 상거래를 구속하기 위한 계약이나 연합 금지에 대한 조항으로써 MS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텔의 PC에 자사 운영체제(OS)를 넣어 만들도록 불법적 캠페인을 벌인 것과 MS가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어떤 조치들 즉, 브라우저를 운영체제에 끼운 후 인텔과 독점거래 협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1항의 위배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MS가 다른 회사들과 벌인 시장 협정은 1항 하에 결정되는 기준으로 볼 때 불법적 독점거래 구성요소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서 피고가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정은 연관 시장(relevant market)에서 상행위의 경계(boundaries)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피고가 실제 가격조정의 권한이나 시장으로부터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전세계적으로 인텔이 MS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는 라이선싱을 통해 관련시장의 선결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15조 2항은 시장독점을 위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써 MS의 브라우저 끼워팔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권을 유지하면서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 시도했으므로 2항에 위배되었는데, 이는 MS가 실질적으로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용하여 브라우저 시장에서도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S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관한 재판은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어 조만간 항소심으로 올라가거나 곧장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정조치(Remedy)에 대한 공판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정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MS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벌금 부과와, 시장에서 상행위 제한, 마지막으로 MS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정조치로 MS를 윈도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인터넷사업 3개 기업으로 분할하거나,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몇 개의 소 MS(Baby Bills)로 분할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4. 국내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 연방지법이 MS사의 윈도 운용체제(OS) 독점권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OS에서부터 사무용, 웹브라우저,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에서도 SW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MS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 분할'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받을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결합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최근 PC업자 등을 중심으로 윈도의 가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경쟁적 시장에서의 MS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저가 전략을 덤핑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MS의 독점적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MS에 거액의 로열티를 제공하던 국내 컴퓨터 관련업체들에게 반사 이익을 안겨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윈도OS 기반의 SW 개발업체들이나 윈도OS를 PC에 탑재하는 컴퓨터업체들은 앞으로 MS와 계약할 때 로열티 감면 요구를 정면으로 할 수 있는 협상력 강화의 전기를 맞을 수 있으며 SW업체들은 MS의 사업 위축이 서버와 데스크톱용 OS시장에서 리눅스가 약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가. 국내 리눅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독점판결로 리눅스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리눅스용 프로그램 개발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컴리눅스, 엘릭스 등 국내 전문 리눅스 프로그램개발업체들은 제품출시를 앞당기고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제휴를 맺는 등 리눅스 시장확대와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눅스는 지난 '98년부터 서버 OS시장에서 유닉스를 제치고 25%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MS와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이번 판결이 리눅스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면 리눅스의 입지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서버 OS 시장에서 리눅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판결로 리눅스를 채택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유닉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유닉스 업계도 기업용 시장에서 윈도 OS의 세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MS는 윈도2000 출시를 기회로 기업용 시장에 발을 뻗치려하고 있으나, 유닉스 진영은 솔라리스 등 유닉스 OS가 윈도2000에 비해 안정성이나 확장성 등에서 견고하다는 장점을 적극 부각시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Full text Conclusions of Law and Final Order”,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000. 4. 3
- [2] “Judge rules Microsoft violated antitrust law”s, CNET News.com, 2000. 4. 3
- [3] “Remedy to come in 60 days in Microsoft case”, CNET News.com, 2000. 4. 5
- [4] “Microsoft works on image with ads”, CNET News.com, 2000. 4. 5
- [5] “Justice Department to defend Microsoft prosecution”, CNET News.com, 2000. 4. 6
- [6] “Microsoft now faces slew of civil lawsuits”, CNET News.com, 2000. 4. 7
- [7] 「MS가 걸어온길」, 디지털 타임스, 2000. 4. 6
- [8] 「MS 독점판결 의미와 전망」, 디지털 타임스, 2000. 4. 6
- [9] 「MS 독점판결이 국내 SW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자신문, 2000. 4. 6

DDI, IDO, KDD의 cdmaOne 이동전화 국제 로밍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최미란
(T. 570-4262, cmr@kisdi.re.kr)

1. 개 요

일본 교세라 계열의 최대 신규통신사업자인 DDI, 도요타자동차 계열의 국제전신전화 사업자 KDD, 도요타의 자회사로 이동전화사업자인 IDO 등 3개사가 4월 21일부터 한국과 홍콩에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를 시작한다. 한편 3사는 국제전화에서 시외전화, 이동전화, PHS 사업에 이르기까지 통신전반을 담당하는 종합통신회사로 재탄생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자로 합병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로밍서비스 개시 발표 이후 DDI의 주식은 4월 7일 전 날에 비해 11.23% 오른 101만엔으로 마감하였으며, KDD의 주식도 10.34% 올라 10,380엔에서 마감하였다. DDI가 도요타의 새 주식에 1,200억엔을 출자하기로 발표한 후라 주식이 더욱 큰 상승효과를 보였다.

새로운 로밍서비스의 명칭은 “GLOBAL PASSPORT”라고 명명되었는데 일본 최초의 지상 무선통신 국제로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GLOBAL PASSPORT”서비스는 일본에서 이용하던 동일한 단말기와 번호로 해외에서도 이용가능하다. 그